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056

2024. 9. 2.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4. 9.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태균)

###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전문적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 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사 무 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다. 추진근거

-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동법 시행령 제76조

라. 출연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임직원 교육, 경영지도·컨설팅, 정책연구 등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

마.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법정지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법정지정기관)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

바. 출연대상 기관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법인설립 : 1992. 3. 2.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 16.6)
- 조 직 : 3실 2센터 / 정원 65명 ※현원 62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0명, 감사 1명

- 시설현황 : 건물(지상6층) 연면적 2,550㎡, 부지 640㎡
- 위 치 도



청사현황



위 치 도

###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8,000천원
- 산출근거 : 경상운영비 50,000천원, 사업비 28,000천원

### III.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1)</sup>에 따라 2025년도 세출예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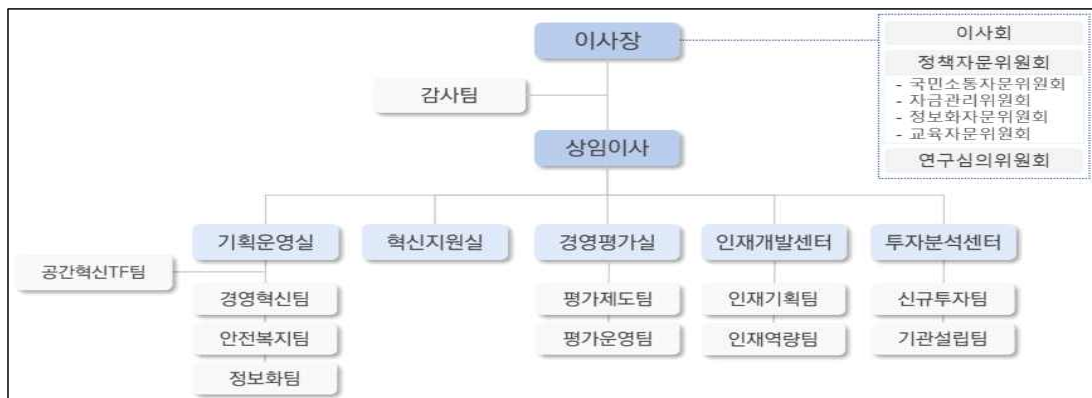
#### 2.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 및 출연 근거

-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인 ‘지방자치경영협회’ (1992. 3.)로 출범하였으나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2016. 3. 30. 시행)에 따라 지방공기업 관련 컨설팅·정책 연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으로 설립됨<sup>2)</sup>.

- 평가원은 3실 2센터, 정원 65명(현원 62명\*)으로 구성·운영되며, 지방공공기관의 컨설팅·연구, 경영평가, 타당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인력구성: 임원 2(상근), 연구직 37, 일반직 23(행정 13, 교육 10)

#### < 조직 현황 >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 연혁: (재)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92.3) → 지방공기업법상 특수법인 전환('94.8) → 한국자치경영협회로 재단법인화('00.1)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11.4) →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16.6)

- 임원 구성<sup>3)</sup>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에 해당함(평가원 정관 제18조).

\*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는 ①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②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의 기획조정(관리)실장 4~5명(윤번제 선임<sup>4)</sup>)으로 구성

- 평가원의 2024년도 예산 현황은 약 197억 9천만원이며, 출연금으로 인한 수입은 45억 8천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23.1%를 차지함.

### < 평가원의 2024년 예산 현황 >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출연금	사업수입	기타	인건비	사업비용	경상경비	시도지원비	기타
45.8 (23.1%)	109.4 (55.3%)	42.7 (21.6%)	56.5 (28.6%)	56.5 (28.6%)	27.6 (13.9%)	11.7 (5.9%)	45.6 (23.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sup>5)</sup>, 이에 서울시를 포함한 시·도와 지방공사·공단 등 152개 기관(23년 기준)이 출연금 배분기준에 따라 평가원에 출연하고 있음.

3) 현재 12명의 임원(이사장 1, 상임이사 1, 당연직 이사 5, 위촉직 이사 4, 감사 1)으로 구성됨.

4) 평가원 정관 별표 1에 따르면, 당연직이사 기수별 임기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2년)이며, 기수별 시·도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는 2027년~2028년 역임 예정  
 1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2기: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3기: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4기: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이하 생략)

### 3. 평가원에 대한 출연 적정성 검토

- 동 출연 동의안은 2025년 서울시의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7천 8백만원을 출연금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였음.
- 평가원에 대한 출연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먼저 평가원의 2025년도 출연금 요구안을 살펴보면, 시·도 출연금은 10억 2백만원, 지방공사·공단 출연금은 36억 7천 8백만원으로, 2025년도 평가원 세입예산 153억 8천 8백만원(추정치)의 30.4%인 46억 8천만원임.

< 2025년 평가원 세부 세입 전망 >

항 목		수입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출 연 금		4,680백만원(3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출연금(17개 시·도) : 1,002,000천원</li> <li>◦ 지방공사·공단 출연금(158개 기관) : 3,677,600천원</li> </ul>	
사업 수입	경영평가	3,346백만원(21.7)	◦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위탁사업비	'24년 실계약 금액
	고객만족도 조사	2,072백만원(13.5)	◦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388개 기관)	
	타당성조사	2,440백만원(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22개 과제 × 80,000(단가) = 1,760,000천원</li> <li>◦ 지방공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 4개 과제 × 90,000(단가) = 360,000천원</li> <li>◦ 지방출자·출연 설립 타당성 검토 - 2개 과제 × 80,000(단가) = 160,000천원</li> <li>◦ 타법인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 - 2개 과제 × 80,000(단가) = 160,000천원</li> </ul>	
	교육연수	2,699백만원(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과정(390명) : 83,250천원</li> <li>◦ 지방공사·공단과정(2,700명) : 627,500천원</li> <li>◦ 기관 공통과정(5,770명) : 1,548,200천원</li> <li>◦ 출자·출연기관 과정(920명) : 284,750천원</li> <li>◦ 특별 및 맞춤형 과정(4,220명) : 155,000천원</li> </ul>	
	소 계	10,556백만원(68.6)		
기 타 수 입 등		152백만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료 수입 - 16,700 × 2층 × 2월 = 66,800천원</li> <li>◦ 운영자금 이자 : 85,000천원</li> </ul>	
합 계		15,388백만원(100)		

- 이러한 17개 시·도가 분담하는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50%)와 공기업 수(50%)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서울시는 재정력 지수 4구간(재정력 지수 1.0263)과 공기업 수의 3구간(공기업 수 32)에 해당되어 2016년부터 7천 8백만원을 출연하고 있음.
- 서울시의 지방공사·공단(자치구 지방공기업 포함)은 출연금 배분기준<sup>6)</sup>에 따라 산정된 6억 7천 6백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부담할 계획임.

< 2025년 평가원 세부 세입 전망 >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2구간-40%)	세종, 제주	18	0.5 (2구간-40%)	세종, 제주	18
1 (2구간-20%)	0.5이하 ~	24	1 (2구간-20%)	1~15	24
2 (기준구간)	0.5~0.7이하	30	2 (기준구간)	16~25	30
3 (2구간+20%)	0.7~0.9이하	36	<b>3 (2구간+20%)</b>	<b>26~35</b>	<b>36</b>
<b>4 (2구간+40%)</b>	<b>0.9초과 ~</b>	<b>42</b>	4 (2구간+40%)	36~	42

\* 2구간(30백만원) 기준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세종,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 주요 시도별 출연금 배분금액 >

(단위: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4	2025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서울특별시	78	78	-	1.0263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171	3	36	9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11	3	36	15	1	24
경기도	84	84	-	1.0842	4	42	97	4	42
경상남도	72	72	-	0.6440	2	30	36	4	42

6) 매출액(50%), 직원 수(30%), 자산(30%)을 기준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서울시의 2025년 출연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등 정책연구·컨설팅 및 전문인력 등 인건비(38명)로 5천만원이 책정되고, 시·도 등 지원사업비(정책연구, 컨설팅, 발전사업)로 2천 8백만원이 편성됨.

< 2025년 서울시 출연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세부산출 내역
계	78	
경상운영비	50	
인건비	50	
기본급	50	• 1,000백만원 × 5% (연구직 38명)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정책연구 및 컨설팅, 임직원 전문교육 전문인력 등(38명) 인건비
시도등지원사업비	28	
정책연구	8	• 외부전문가 보상비, 인쇄비, 회의비, 포럼 등
컨설팅	8	• 외부전문가 보상비, 인쇄비, 회의비 등
발전사업	12	• CEO 및 신규입사자, 온라인 등 무료교육

-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동 평가원은 서울시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연구 과제 수행, 경영 컨설팅, 역량강화 전문교육, 법무·노무·세무 등의 자문을 수행하였음.

< 서울시 대상 평가원 주요 사업 추진 실적('21~'24.7월) >

(단위: 백만원)

연도	출연금 규모	시도 출연내역	서울시 출연내역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서울시 대상)
'21	4,346	1,014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총 30개 기관(상수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24개 자치구 시설공단)</li> <li>○ 정책연구 : 23개 과제 수행</li> <li>○ 컨설팅 : 11개 기관, 11건(시설공단 '지방공기업 ESG 경영 지원' 등)</li> <li>○ 역량강화 전문교육 : 678개 과정 31,187명</li> <li>○ 법무·노무·세무 등 자문 : 18건(기술연구원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문 등)</li> </ul>



연도	출연금 규모	시도 출연내역	서울시 출연내역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서울시 대상)
'22	4,383	1,008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평가 : 총 31개 기관(하수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설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4개 자치구 시설공단)</li> <li>○ 정책연구 : 17개 과제 수행</li> <li>○ 컨설팅 : 20개 기관, 24건(주택도시공사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지원' 등)</li> <li>○ 역량강화 전문교육 : 870개 과정 42,365명</li> <li>○ 법무·노무·세무 등 자문 : 19건(서울연구원 '중대 시민재해 해당 여부' 자문 등)</li> </ul>
'23	4,570	1,008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평가 : 총 31개 기관(상수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설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4개 자치구 시설공단)</li> <li>○ 정책연구 : 16개 과제 수행</li> <li>○ 역량강화 전문교육 : 712개 과정 42,980명</li> <li>○ 경영컨설팅 : 24개 기관, 28건(서울의료원 'NCS를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직무분석 지원' 등)</li> <li>○ 법무·노무·세무 등 자문 : 16건(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사항' 등)</li> </ul>
'24. 7월	4,680	1,002 (요청)	78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평가 : 총 31개 기관(상수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설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4개 자치구 시설공단)</li> <li>○ 정책연구 : 5개 과제 수행 중</li> <li>○ 역량강화 전문교육 : 639개 과정 21,230명</li> <li>○ 경영컨설팅 : 17개 기관, 18건(서울에너지공사 '지방 공공기관 경력경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지원' 등)</li> <li>○ 법무·노무·세무 등 자문 : 11건(문화재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등)</li> </ul>

- 동 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법적 근거<sup>7)</sup>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 임직원 교육, 상시자문 등 동 평가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경영지원 업무<sup>8)</sup>를 수행 중이고, 서울시 외에도 16개 시·도가 출연하고 있다는 실정을 고려하면 평가원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7)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평가원은 공사·공단 외에 서울시 출연기관의 경우에 별도 출연금 납부 없이 컨설팅·자문 등 경영지원을 하여 출연기관 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시 에너지공사나 자치구 시설공단 등 자체 인재교육 플랫폼이 없는 소규모 기관의 경우, 평가원 등을 통해 의무교육을 진행 중임.

- 다만 동 평가원에 대한 출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먼저 평가원 출연 동의안의 첨부서류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제3항<sup>9)</sup>은 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제출해야 하는 출연금 요구서 및 첨부서류(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추정 손익계산서) 제출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안건 제출 시기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 전<sup>10)</sup>까지 제출해야 하고, 대체로 8월 말에 임시회가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 평가원의 사업계획서나 재무상태표 등이 첨부되지 않고 출연 동의만 제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
  - 이러한 자료 제출 시기의 불일치는 동 평가원에 대한 출연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는 심의의 형식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평가원의 출연금 규모와 관련하여, 평가원은 2025년도 출연 요구를 하면서 향후에는 물가상승, 인력 증원 등을 근거로 출연금을 인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출연금 인상을 위해서는 동 평가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합리적인 출연금 규모 산정이 필요함.

9)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10)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발의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평가원의 연도별 수입 내역과 관련하여, 흑자경영 유지를 위해 전기이월금<sup>11)</sup>의 규모가 2019년 약 3억원에서 2023년 30억원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평가원의 출연금 인상 요구 시 평가원의 재무 상황을 토대로 적정 규모의 출연금 산정을 위한 의견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연도별 평가원 수입 내역 >

(결산 기준, 단위: 천원)

구분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수입	출연금	4,216,900 (28.1)	4,278,800 (27.9)	4,346,000 (24.3)	4,383,100 (24.3)	4,482,500 (25.1)
	사업수입	10,482,329 (69.8)	10,086,013 (65.7)	11,159,780 (62.5)	11,109,796 (61.5)	10,235,578 (57.2)
	기타수입	35,757 (0.2)	20,396 (0.1)	527,460 (3.0)	51,363 (0.3)	82,143 (0.5)
	전기이월금	292,923 (1.9)	966,667 (6.3)	1,826,502 (10.2)	2,530,025 (14.0)	3,084,369 (17.2)
	수입 계	15,027,909	15,351,876	17,859,742	18,074,284	17,884,590

\* 자료: 지방공기업평가원 누리집(<https://erc.re.kr>) 경영공시 검색(2024. 8. 16. 검색 기준)

- 또한 행정안전부가 동 평가원을 통해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3조<sup>12)</sup>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운영·관리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법령 개정 건의<sup>13)</sup>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의 지방이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11) 평가원은 흑자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손익수입(예산)에 대비하는 손익지출(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고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거나, 발생주의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비현금계정) 등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을 관리·운영하므로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함.

\*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지만, 회계상 이익 계산에는 반영

12)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지방공기업법」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13) 담당 부서(공기업담당관)의 확인에 따르면, 2021년에 두 차례(1월·2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 지방이양 건의를 전달한 바 있으나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지방공기업 설립·감독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수검을 위해 별도로 평가원에 출연금을 납부하는 구조는 자치권 강화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56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전문적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 나. 사무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 다.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동법 시행령 제76조
- 라. 출연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임직원 교육, 경영지도·컨설팅, 정책연구 등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

#### 마.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법정지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법정지정기관)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

#### 바. 출연대상 기관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법인설립 : 1992. 3. 2.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16.6)
- 조 직 : 3실 2센터 / 정원 65명 ※현원 62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1명, 감사 1명
- 시설현황 : 건물(지상6층) 연면적 2,550 $m^2$ , 부지 640 $m^2$
- 위치도



청사현황



위치도

####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8,000천원
- 산출근거 : 경상운영비 50,000천원, 사업비 28,000천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이효성(☎2133-6779)